

주간농업·농촌동향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·시행

2010.07.26 미래정책연구실

※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·시행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주요 내용

< 주요 내용 >

- ①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 조성, 평시 차단방역 강화 및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
- ②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
- ③ 생산자 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축산환경 캠페인 전개

□ 개선방안

1. 축산환경 개선

- 차단방역, 환경관리,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**면허제 도입**
 - 면허요건 : 일정기간 방역·안전·환경·경영 등에 관한 교육 이수
- **축산업 등록제 강화**
 - 등록 축종 확대 : 소, 돼지, 닭, 오리 → 모든 우제류·조류
 - 등록 농가 확대 : 사육시설 50~300㎡ 초과 → 50㎡ 초과
 - 축산업 등록 기준 강화
 - 종축시설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
 -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 확보 의무화

- 적정 사육기준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지자체 제재 강화
 - 기본과태료 상향조정(예, 1차 위반 : 3만 원 → 10만 원, 2차 위반 : 30만 원 → 50만 원, 3차 위반 : 100만 원 → 200만 원)
 - 적정사육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가중처벌(예, 20% 밀식 : 기본 × 120%)
 - 축산관련 사업비 지자체 배정시 축산농가 등록제 등록실태 및 준수사항 위반농가 조치실적 고려
- **축산환경 평가기준 마련**
 - 농장 HACCP·동물복지 기준,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축산환경 평가기준 마련, 정책대상 선정시 평가결과 적용
 - 차단방역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 컨설팅 지원 확대
- **축산물 인증제 개편**
 -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표시제 시범사업 추진
 - 인증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란계 농장에 우선 도입, 제도의 성공 가능성 타진 후 타 축종 등으로 확대
 -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(10년 7월), 시범평가(10월)
 - 농장 HACCP 등 축산물 인증기준 변경
 -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방법, 가축법에서 규정한 농장 의무사항, 축산환경 평가기준,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농장 HACCP 기준 보완
 - 농장 HACCP 기준을 반영하여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변경, 상위단계 인증시 하위단계 인증제 표시권 부여
 - 인증 단계 : 농장 HACCP ▷ 무항생제/동물복지형 축산물 ▷ 유기 축산물
 - 농장 HACCP 정착 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폐지
- **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**

-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농협,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축산혁명 캠페인 전개
- 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시상 및 홍보, 농가 교육·컨설팅 자료로 활용
- 농장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담 컨설팅단 구성·운영

2. 평시 방역체계 개선

○ 축산농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

-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신고 의무화,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 시 소독 및 격리기간(5일) 준수
- 관리 미흡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삭감 등 제재 강화

○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 의무 강화

-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(탑승자 포함)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확대
- 가축·원유·동물약품·사료·가축분뇨 운반자 → 기준, 수의사, 인공수정사,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

-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

- 주소지 관할 시·군에 가축거래 상인임을 신고하여 신분증 발급
- 신분증 없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거래내역 기록관리 미흡시 과태료
- 의무사항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- 방역·검역 의무사항을 위반,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시설 폐쇄 명령, 보상금 삭감 등 추가

○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역추진 실태 점검 강화

- 축산농장 D/B 구축, 점검대상 선정 프로그램(중복 점검 방지 등) 개발 등을 통한 상시 점검 강화

- 국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(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)

-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 투입, 시범 실시 후 확대

○ 축산농가의 외국 여행 후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등 국경검역 강화

- 축산농가 악성가축질병 발생지역 여행 자제,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·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 의무화
- 축산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
- 출입국관리소 협조로 축산농가 입국시 신고 촉구 문자메시지 발송,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소독 조치 및 방역교육

3. 질병 발생시 방역체계 개선

○ 신고 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(고시),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,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완

- 초동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보완

- 예) 경계단계 조치사항을 주의단계 조치사항으로 하향 조정 등

- “기반 축산시설”에 대한 통제와 구제역 확산 원인이 되는 “축산관련 종사자”에 대한 방역관리 규정 추가

- 농장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위기단계 제한조치 신설

- ※ 기반 축산시설 : 국가 및 지자체 종축장, 농협 개량사업소 등

- ※ 축산관련 종사자 : 사료·동물약품·수의사·인공수정사·AI센터·컨설팅·축산기자재업체·HACCP 관계자 등

○ 지자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 훈련 등 실시(매년)

-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

○ 유사시 대비 방역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태세 구축 여부 점검

- 분기별로 소속기관 직원의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, 지자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실적 등 점검

· 분기별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시·도, 시·군·구에 지시

○ **중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**하고, 지자체 축산 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질병발생시 중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

- 한우 : 서산, 무주 → 12년까지 2개소(경북, 대관령) 추가 조성
- 젓소 : 경기 고양 → 11년까지 2개소(영양, 천안) 추가 조성
- 돼지·닭·오리 : 축산과학원이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, 중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 구축

4. 피해 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

○ **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·수매 관련 제도 개선**

- 새끼돼지(30kg 이하) 살처분 보상금 세분화 : 포유자돈(4주 이내), 이유자돈(4~8주), 새끼돼지(9~10주)
- 이동제한 및 폐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, 인공수정사 등 및 방역대내 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
- 이동제한 가축의 신속한 수매 및 농가의 방역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SOP에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지침 신설

5. 농수산물식품 검역·검사기관 통합

○ **농식품부 3개 소속기관(수의과학검역원, 식물검역원, 수산물품질검사원)을 통합**하여 일관된 방역·검역·검사 체계 구축

- 공통부서 인력은 현장에 재배치(55명 증원효과 발생)하고, 시설·장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성 제고
- 인력 : 1,289명(현 정원 유지) - 수과원 591명, 식검 432명, 수검원 266명
- 농식품부는 정책기능만 수행, 방역·검역·검사관련 집행업무를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
- 각 시·도에 방역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

주간농업·농촌동향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계획안

※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안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**기본방향**

- < 기본방향 >
- ①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농장의 이동시 “표시”하여 사육부터 도축단계까지 일괄 관리
 - ②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(14년) 후,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「농장단위 이력관리제」로 전환하여 확대 시행

□ **운영 계획안**

1. 관리기반 조성(2010년)

-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9천 5백여 양돈장 중 축산업 등록 대상인 8천 1백호 농가는 **현행 축산업 등록번호(5자리)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**하고, 미 등록대상인 1천 4백호 농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별도의 고유번호 부여
- 축산업 등록번호는 영어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한 5자리로 구성(“XA4PU”, “XA4S3”, “SE2WA” 등과 같이 부여)
- 농장에서 **출하되는 모든 돼지에 고유번호를 표시**할 수 있도록 번호 표시기를 제작·공급하여 농장별 이력관리 기반 조성
-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영등이

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(다만, 자돈은 문신 또는 이표 중 선택)

- 전국 양돈장 현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'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'에 입력하고, 농장 변경사항·예방백신 공급 실적·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2. 농가단위 관리기반 구축(2011년)

-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영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함.
 - 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하여 문신 또는 이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.
- 돼지췌코바이러스(PCV-2) 백신,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 금지
-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3. 이력관리제 기반 구축(2012년~2013년)

-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 제·개정을 통해 “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” 제도 마련
-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“이력관리제” 시범사업 실시

4. 농장단위 이력관리제 시행(2014년~)

- 고유번호 미 표시 또는 전산시스템 미 등록 농장의 돼지에 대한 거래 및 도축 금지 등 “이력관리제” 전면 시행